

「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0일 이범연의원의외 5인이 발의하여, 2016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,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 및 대상(안 제4조)
 -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
- 지원신청 등(안 제5조)
 - 보험료 추가지원은 해당 보험사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환수(안 제6조)
 -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
- 사후관리(안 제7조)
 - 군수는 해마다 사업수행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해당 보장내용 등의 실적 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

3. 관련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4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,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

- 주요 내용을 보면

-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및 대상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
- 안 제6조에서는 환수
-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.

-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,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